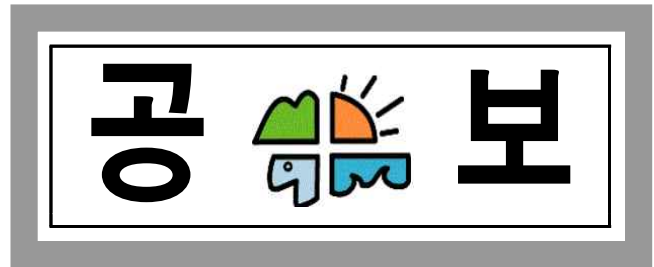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390호 2022년 5월 27일(금)

고 시

- 속초 도시관리계획(금호4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
- 속초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공설운동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6
- 속초 도시관리계획(도로 및 교통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7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조양동 415번지 외 73필지) 8
- 속초 도시관리계획(조양9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1
- 속초 도시관리계획(도로: 소로3-4호선)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1

공 고

-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노학동 산506-1) 15

속초시고시 제2022-64호

속초 도시관리계획(금호4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속초시 고시 제2022-63호(2022. 5. 20.)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속초 도시관리계획(금호4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5월 27일

속 초 시 장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49	금호4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속초시 금호동 622-40번지 일원	-	증) 44,514	44,514	-

1.1.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신설	49	속초시 금호동 622-40번지 일원	44,514	도시 기능·미관 및 환경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수준 높은 주거시설 등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2.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2.1.1. 용도지역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 없음)

구 분	구역내 면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44,514	-	44,514	10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36,788	-	36,788	82.60	-
준주거지역	7,726	-	7,726	17.40	-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3.1. 도로

3.1.1. 도로총괄표

■ 기 정

구분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계	4	3,052	49,486	2	2,534	46,257				2	518	3,229
중로	1	2,021	41,051	1	2,021	41,051						
소로	3	1,031	8,435	1	513	5,206				2	518	3,229

■ 변 경

구분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계	3	2,746 (608)	51,340 (2,814)	2	2,536 (398)	48,778 (1,523)				1	210 (210)	2,562 (1,291)
중로	1	2,021 (130)	41,222 (279)	1	2,021 (130)	41,222 (279)						
소로	2	725 (478)	10,118 (2,535)	1	515 (268)	7,556 (1,244)				1	210 (210)	2,562 (1,291)

※()는 구역내 연장 및 면적임.

3.1.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 정	소로	1	75	10	국지 도로	513 (268)	중앙 506체 중로1-1	장사 산313-1유 중로3-19	일반 도로		1969.3.25 (강고 제69-2119호)	
변 경	소로	1	75	10~17	국지 도로	515 (268)	중앙 506체 중로1-1	장사 산313-1유 중로3-19	일반 도로			
기 정	소로	3	83	6	국지 도로	220 (210)	중앙 509-9도 소로1-75	금호 628도 중로1-1	일반 도로		1977.4.19 (강고 제77-72호)	
변 경	소로	3	83	6~12	국지 도로	210 (210)	중앙 509-9도 소로1-75	금호 628도 중로1-1	일반 도로			
기 정	소로	3	89	6	보조 간선	298 (298)	중앙 506체 소로1-75	금호 622-363대 소로3-83	일반 도로		1977.4.19 (강고 제77-72호)	
변 경	-	-	-	-	-	-	-	-	-	-	-	폐 지
기 정	중로	1	1	20	보조 간선	2,021 (130)	금호 624-1도 중로1-2	교동 784-81도 2호광장	일반 도로		1969.3.25 (강고 제69-2119호)	
변 경	중로	1	1	20~23	보조 간선	2,021 (130)	금호 624-1도 중로1-2	교동 784-81도 2호광장	일반 도로			

※()는 구역내 연장임.

3.1.3.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75	소로1-75	◦ 연장(513m → 515m) 및 폭원(10m → 10~17m) 변경	◦ 공동주택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설치에 따른 일부구간 연장 및 폭원 변경
소로3-83	소로3-83	◦ 연장(220m → 210m) 및 폭원(6m → 6~12m) 변경	◦ 공동주택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설치에 따른 일부구간 연장 및 폭원 변경
소로3-89	-	폐 지	◦ 사업계획구역 내 전체 편입으로 인하여 개설이 불필요하게 되어 도시계획시설 폐지
중로1-1	중로1-1	◦ 폭원변경(20m → 20~23m)	◦ 공동주택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설치에 따른 일부구간 폭원 변경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문

4.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4.1.1.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 번호	획 지			비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²)	
신 설	BL1	A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622-188번지 일원	41,700	공동주택
		B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622-259번지 일원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510-3번지 일원	2,814	공공시설
합 계				44,514	

※ 공공시설의 경우 당해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개설하여 기부채납 예정임.

4.2.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4.2.1.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분	결정내용
A	금호동 622-40번지 일원	허용용도	◦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공동주택, 제13호의 부대시설 및 제14호의 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제2종일반 주거지역 ◦ 60% 이하
			준주거지역 ◦ 70% 이하
		용적률	제2종일반 주거지역 ◦ 250% 이하
			준주거지역 ◦ 400% 이하
		높 이	◦ 25층 이하
		배 치	◦ 도면참조
		형 태	◦ 도면참조
		색 채	◦ 도면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6m

5. 기타사항에 관한 부문

5.1.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A	금호동 622-40 번지 일원	단지내 조경	◦ 「건축법」 및 「속초시 건축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한 설치기준 이상 조성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 결정도에 차량출입허용구간으로 표현된 부분에 한하여 차량출입을 허용 ◦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구간을 지정하여 차량 진출입구 설치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법」 및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설치기준 이상의 주차장 확보	

속초시고시 제2022-65호

속초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공설운동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속초시 고시 제2022-63(2022. 5. 20)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속초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공설운동장)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5월 27일

속 초 시 장

가. 속초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공설운동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조서: 아래조서 참조

나. 속초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공설운동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실음생략

1.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공설운동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공 설 운동장	체육시설	속초시 중앙동 506번지 일원	22,690	감) 42	22,648	1987.2.21 (강고 제87-12호)	

☐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공 설 운동장	◦ 면적 : 22,690m ² → 22,648m ² (감 42m ²)	◦ 공동주택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및 보도· 도로 확장에 따른 폭원 변경으로 인한 면적변경

속초시 고시 제2022-67호

속초 도시관리계획(도로 및 교통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속초 도시관리계획(도로: 대로1-3호선 및 교통광장2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5월 27일

속 초 시 장

가.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조서 : 아래조서 참조

나.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실음생략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가. 교통 시설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3	35~46	주 간 선 로	1,779	교동306-1임 2호 교통광장	장사 산10-2임 속초시 경계	일반 도로	1992.10.9. (강고 제92-113호)	선형
변경	대로	1	3	35~46	주 간 선 로	1,779	교동306-1임 2호 교통광장	장사 산10-2임 속초시 경계	일반 도로	1992.10.9. (강고 제92-113호)	변경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1-3	대로1-3	◦ 선형변경(연장 및 폭원 변경 없음)	◦ 현재 개설되어있는 대로1-3 현황에 맞추어 도로선형 일부 조정

나. 공간 시설

■ 교통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광장	교통광장	교동 307-5번지	3,954.7	증) 859.3	4,814	1986.6.3. (건고 제238호)	

■ 교통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2	◦ 위치 : 교동 307-5번지 일원 ◦ 면적 : 3,954.7㎡ → 4,814 증) 859.3㎡	◦ 속초시고시 제2015-48호로 결정되어 있는 면적(3,954.7㎡)과 국토이용정보체계 상 등재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2호 교통광장)의 오차면적을 조정하고 현재 개설되어있는 교통광장 현황에 맞추어 선형일부 조정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주택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27일

속 초 시 장

1. 사업명칭 : 속초시 조양동 415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 및 대표자 : 아시아신탁(주) 대표 배일규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3. 사업위치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415번지 외 73필지
4. 사업개요

사업종류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분양주택	○ 대지면적 : 26,884.90㎡ ○ 건축면적 : 4,003.28㎡ ○ 연 면 적 : 92,325.15㎡ ○ 주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층 수 : 지하2층 / 지상 16~29층 ○ 세 대 수 : 578세대	195,817,789천원	

5. 사업시행기간 : 2019. 11. 01. ~ 2022. 6. 3.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
 -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7. 관계서류는 속초시청 건축과(☎033-639-2773)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하게 합니다.

<붙임 1>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1.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후	
37	조양9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속초시 조양동 415번지 일원	36,052	감) 206.6	35,845.4	

1.1.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번호	위 치	면적(m ²)		결 정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변경	37	속초시 조양동 415번지 일원	36,052	35,845.4	• 확정측량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 면적 변경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2.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2.1.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후		
합 계		36,052	감) 206.6	35,845.4	100.0	
주거지역	소계	35,088	감) 206.6	34,881.4	97.3	
	제2종일반주거지역	35,088	감) 206.6	34,881.4	97.3	
녹지지역	소계	964	—	964.0	2.7	
	생산녹지지역	532	—	532.0	1.5	
	자연녹지지역	432	—	432.0	1.2	

2.1.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m ²)	결 정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	속초시 조양동 415번지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4,881.4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생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532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432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3.1. 도로

3.1.1. 도로 총괄표

구분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계	기정	6	737 (2,719)	8,847 (32,078)	1	54 (257)	546 (3,338)	2	249 (642)	2,257 (6,065)	2	434 (1,820)	6,044 (22,675)
	변경	6	737 (2,719)	8,778.5 (32,023.7)	1	54 (257)	546.0 (3,338)	2	249 (642)	2,244.6 (6,052.6)	2	434 (1,820)	5,987.9 (22,633.1)
중로	기정	3	440 (1,899)	6,162 (23,860)	-	-	-	1	6 (79)	118 (1,185)	2	434 (1,820)	6,044 (22,675)
	변경	3	440 (1,899)	6,105.9 (23,818.1)	-	-	-	1	6 (79)	118.0 (1,185.0)	2	434 (1,820)	5,987.9 (22,633.1)
소로	기정	3	297 (820)	2,685 (8,218)	1	54 (257)	546 (3,338)	2	243 (563)	2,139 (4,880)	-	-	-
	변경	3	297 (820)	2,672.6 (8,205.6)	1	54 (257)	546.0 (3,338.0)	2	243 (563)	2,126.6 (4,867.6)	-	-	-

- ※ 1)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연장 및 폭원 등 시설계획은 변경사항 없음
 2) () 안 숫자는 전체 도로(중로 2-25호선, 중로 3-33호선, 소로 1-21호선, 소로2-163호선의 총연장 및 총면적 포함)의 합계에 대한 수치임
 3) 중로 2-25호선의 경우 본 공동주택조성사업으로 인한 중로 3-6호선 차선체계 변경으로 도로연장축소가 발생하여 해당 구간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
 4) 중로 3-6호선의 경우 본 공동주택조성사업으로 인한 차선체계 변경으로 일부 구간의 도로폭원변경이 발생하여 해당 구간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
 5) 소로1-21호선과 소로2-163호선은 기초성 완료된 도시계획시설(도로)로서 별도 도로시설 개량 등의 행위는 일어나지 않음

3.1.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25	15	보조 간선도로	6 (79)	조양69전 중로3-6	조양79도 대로3-1	일반도로	청초천	2007. 11. 2 (강고 제2007-236호)	
기정	중로	3	6	12~15	보조 간선도로	124 (1,510)	조양547-2도 중로1-8	노학1268도 중로1-23	일반도로	청초천	1976. 3. 27 (건고 제37호)	
기정	중로	3	33	12~18	보조 간선도로	310	조양387-2임 소로2-231	조양400-5도 중로3-6	일반도로	속초상업 고등학교	1992. 10. 9 (강고 제92-113호)	
기정	소로	1	21	10	국지도로	54 (257)	조양510-21도 중로3-6	조양462전 소로2-163	일반도로		1977. 4. 19 (강고 제77-72호)	
기정	소로	2	231	8.5	국지도로	210	조양460-1도 소로1-21	조양387-2임 중로3-33	일반도로		2019. 6. 20 (속고 제2019-57호)	
기정	소로	2	163	8	국지도로	33 (353)	조양581-2도 대로1-1	조양497-2전 소로1-21	일반도로		1993. 4. 28 (속고 제93-11호)	

- ※ 1)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연장 및 폭원 등 시설계획은 변경사항은 없음
 2) 연장은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부분의 연장이며 () 안 숫자는 해당 도로의 전체 총연장임
 3) 소로1-21호선과 소로2-163호선은 기초성 완료된 도시계획시설(도로)로서 별도 도로시설 개량 등의 행위는 일어나지 않음

3.1.3.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기정	중로2-25	중로2-25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	중로3-6	중로3-6	• 면적: 1,816m ² → 1,801.8m ²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변경	중로3-33	중로3-33	• 면적: 4,228m ² → 4,186.1m ²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기정	소로1-21	소로1-21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	소로2-231	소로2-231	• 면적: 1,871㎡ → 1,858.6㎡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기정	소로2-163	소로2-163	변경없음	변경없음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문

4.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4.1.1.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증감	변경후	
가구번호와 동일	A1	27,023	조양동 415번지 일원	27,023	감)138.1	26,884.9	공동주택용지
	A2	182	조양동 508-28번지 일원	182	-	182	근린생활시설용지

4.1.2.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결정(변경) 사유
			위 치	면 적(㎡)	
가구번호와 동일	A1	26,884.9	조양동 415번지 일원	26,884.9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A2	182	조양동 508-28번지 일원	182	• 변경없음

4.2.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4.2.1.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결정내용		비 고
-	A1	용도	허용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 제13호의 부대시설 및 제14호의 복리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륜	•250% 이하		
		높 이	•30층 이하		
		배 치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등 구체적인 건축물에 관한 계획은 건축심의시 결정		
		형 태			
		색 채			
		건 축 선	•건축한계선 - 공동주택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 부대복리시설 제외		결정도 참조
-	A2 (신규)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민방위급수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륜	•250% 이하		
		높 이	•1층 이하		
		배 치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등에 관한 사항은 A1 가구의 건축 심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성		
		형 태			
		색 채			
		건 축 선	-		

5. 기타사항에 관한 부문

5.1.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5.1.1. 보행 및 차량 진출입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보행동선	단지 내 보행동선	•주 보행동선으로부터 보조보행동선 유도
차량동선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 진·출입 불허
및 주차	단지 내 차량동선 권장	•단지 내 진입도로와 이면도로로 차량동선 유도

※ “차량출입불허구간”이라 함은 대지 안으로 차량 출입이 불허되는 구간을 말함

※ 주차 출입방향이 표시된 변 중 다음의 구간에서는 차량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 버스정류장, 기타 승하차시설, 횡단보도 전후 10m 구간

속초시 고시 제2022-69호

속초 도시관리계획(조양9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속초시 고시 제2022-68(2022. 5. 27.)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된 속초 도시관리계획 (조양9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 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5월 27일

속 초 시 장

1.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37	조양9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속초시 조양동 415번지 일원	36,052	감)206.6	35,845.4	-

-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기정	변경	
변경	37	속초시 조양동 415번지 일원	36,052	35,845.4	◦ 확정측량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 면적 변경

-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 1) 용도지역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후		
합 계		36,052	감) 206.6	35,845.4	100.0	
주거지역	소계	35,088	감) 206.6	34,881.4	97.3	
	제2종일반주거지역	35,088	감) 206.6	34,881.4	97.3	
녹지지역	소계	964	-	964.0	2.7	
	생산녹지지역	532	-	532.0	1.5	
	자연녹지지역	432	-	432.0	1.2	

-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결 정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	속초시 조양동 415번지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4,881.4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생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532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432	

2) 용도지구 지형도면 승인 조서 : 해당사항 없음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총괄표

구분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계	기정	6	737 (2,719)	8,847 (32,078)	1	54 (257)	546 (3,338)	2	249 (642)	2,257 (6,065)	2	434 (1,820)	6,044 (22,675)
	변경	6	737 (2,719)	8,778.5 (32,023.7)	1	54 (257)	546.0 (3,338)	2	249 (642)	2,244.6 (6,052.6)	2	434 (1,820)	5,987.9 (22,633.1)
중로	기정	3	440 (1,899)	6,162 (23,860)	-	-	-	1	6 (79)	118 (1,185)	2	434 (1,820)	6,044 (22,675)
	변경	3	440 (1,899)	6,105.9 (23,818.1)	-	-	-	1	6 (79)	118.0 (1,185.0)	2	434 (1,820)	5,987.9 (22,633.1)
소로	기정	3	297 (820)	2,685 (8,218)	1	54 (257)	546 (3,338)	2	243 (563)	2,139 (4,880)	-	-	-
	변경	3	297 (820)	2,672.6 (8,205.6)	1	54 (257)	546.0 (3,338.0)	2	243 (563)	2,126.6 (4,867.6)	-	-	-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연장 및 폭원 등 시설계획은 변경사항 없음

※ () 안 숫자는 전체 도로(중로 2-25호선, 중로 3-33호선, 소로 1-21호선, 소로2-163호선의 총연장 및 총면적 포함)의 합계에 대한 수치임

※ 중로 2-25호선의 경우 본 공동주택조성사업으로 인한 중로 3-6호선 차선체계 변경으로 도로연장축소가 발생하여 해당 구간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

※ 중로 3-6호선의 경우 본 공동주택조성사업으로 인한 차선체계 변경으로 일부 구간의 도로폭원변경이 발생하여 해당 구간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

※ 소로1-21호선과 소로2-163호선은 기초성 완료된 도시계획시설(도로)로서 별도 도로시설 개량 등의 행위는 일어나지 않음

▣ 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25	15	보조 간선도로	6 (79)	조양69전 중로3-6	조양79도 대로3-1	일반도로	청초천	2007. 11. 2 (강고 제2007-236호)	
기정	중로	3	6	12~15	보조 간선도로	124 (1,510)	조양547-2도 중로1-8	노학1268도 중로1-23	일반도로	청초천	1976. 3. 27 (건고 제37호)	
기정	중로	3	33	12~18	보조 간선도로	310	조양387-2임 소로2-231	조양400-5도 중로3-6	일반도로	속초상업 고등학교	1992. 10. 9 (강고 제92-113호)	
기정	소로	1	21	10	국지도로	54 (257)	조양510-21도 중로3-6	조양462전 소로2-163	일반도로		1977 .4. 19 (강고 제77-72호)	
기정	소로	2	231	8.5	국지도로	210	조양460-1도 소로1-21	조양387-2임 중로3-33	일반도로		2019. 6. 20 (속고 제2019-57호)	
기정	소로	2	163	8	국지도로	33 (353)	조양581-2도 대로1-1	조양497-2전 소로1-21	일반도로		1993 .4. 28 (속고 제93-11호)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연장 및 폭원 등 시설계획은 변경사항 없음

※ 연장은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부분의 연장이며, () 안 숫자는 해당 도로의 전체 총연장임

※ 소로1-21호선과 소로2-163호선은 기초성 완료된 도시계획시설(도로)로서 별도 도로시설 개량 등의 행위는 일어나지 않음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기정	중로2-25	중로2-25	◦ 변경없음	◦ 변경없음
변경	중로3-6	중로3-6	◦ 면적변경: 1,816㎡ → 1,801.8㎡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변경	중로3-33	중로3-33	◦ 면적변경: 4,228㎡ → 4,186.1㎡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기정	소로1-21	소로1-21	◦ 변경없음	◦ 변경없음
변경	소로2-231	소로2-231	◦ 면적변경: 1,871㎡ → 1,858.6㎡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기정	소로2-163	소로2-163	◦ 변경없음	◦ 변경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²)			
				기정	증감	변경후	
가구번호와 동일	A1	26,884.9	조양동 415번지 일원	27,023	감)138.1	26,884.9	공동주택용지
	A2	182	조양동 508-28번지 일원	182	-	182	근린생활시설용지

가.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결정(변경) 사유
			위 치	면 적(㎡)	
가구번호와 동일	A1	26,884.9	조양동 415번지 일원	26,884.9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A2	182	조양동 508-28번지 일원	182	◦ 변경없음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없음)

도 면 번호	위치	구분	결정내용
A1	조양동 415번지 일원	허용용도	◦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 ◦ 제13호의 부대시설 및 제14호의 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30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등 구체적인 건축물에 관한 계획은 건축심의의 결정
		형 태	
		색 채	
		건축선	◦ 건축한계선 : 공동주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 부대복리시설 제외
A2	조양동 508-28번지 일원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1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등에 관한 사항은 A1가구의 건축심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성
		형 태	
		색 채	
		건축선	-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처리계획: 변경 없음

■ 보행 및 차량 진출입 계획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	조양동 415번지 일원	단지 내 보행동선	◦ 주 보행동선으로부터 보조보행동선 유도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 진·출입 불허	
		단지 내 차량동선 권장	◦ 단지 내 진입도로와 이면도로로 차량동선 유도	

※ “차량출입불허구간”이라 함은 대지 안으로 차량 출입이 불허되는 구간을 말함

※ 주차 출입방향이 표시된 변 중 다음의 구간에서는 차량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 버스정류장, 기타 승하차시설, 횡단보도 전후 10m 구간

2.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도면 : 실음생략

속초시 고시 제2022-73호

속초 도시관리계획(도로: 소로3-4호선)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속초 도시관리계획(도로: 소로3-4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6월 3일

속 초 시 장

가.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조서 : 아래조서 참조

나.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실음생략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가. 교통 시설

■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구 분	구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	4	6	국지 도로	102	소로3-81 교동 670-10도	소2-43 교동 668-23도	일반도로	

■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소로3-4호선	◦ 노선신설(L=102m, B=6m)	◦ 원활한 교통흐름 형성 및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선 신설

위치도 및 현장사진



편입토지조서

구분	소재지(속초시)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1				1,173	513		
2				215	22		
3				7,360	108		
합 계				8,748	643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 대상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05. 27.

속 초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05. 27. ~ 2022. 06. 10.(14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11조제7항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건축위치	관련내용	처분내용	반송사유
주식회사 지엠○	속초시 노학동 산506-1	건축법 제11조제7항(건축허가)	건축허가 취소	이사불명 등

6. 유의사항

- 상기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제7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이를 공시송달 하오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건축과(☎033-639-27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